진부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진부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진부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 필요성

- 진부공영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여객운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사무: 진부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사무범위

- 시설물의 관리 및 기능 유지, 이용자 매표관리 업무
- 여객의 원활한 수송 및 터미널 사용자 편의(화장실 등) 제공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위탁대상시설	비고
진부공영버스터미널	진부면 하진부리 116-7	- 대지면적 515㎡ - 연면적 59.84㎡ (지상1층)	- 지상 1층 매표소, 대합실, 승강장, 공용화장실	

마. 민간위탁기간 : 2027. 1. ~ 2031. 12.(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위탁방법: 공개모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 신청자격

- 터미널 사업 관리 경력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평창군 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주소를 둔 개인

○ 선정기준: 위탁운영 심사평가 총점 최고득점자 협상 선정

- 사업운영 적정성(20점), 사업비 집행계획 및 예산운용(20점)
- 시설, 인력 운영계획의 효율성(30점),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30점)
-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 결과 의회 제출

사. 소요예산 : 금128,899천원(년/부가세포함)(산출근거 붙임1 참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여객의 편의성 확보,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현재 터미널 운영에 필요

○ 부족한 공공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은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진부공영버스터미널에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을 추진

○ 직영 및 민간위탁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직영	- 운영 신뢰성, 책임성 강화 - 정책반영 용이, 공공성 확보	- 행정효율성 저하 - 인력확보 등 재정부담 - 시설관리 전문성 미흡
민간위탁	- 전문성 적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편의성 확보 - 운영예산 절감	- 수익위주 운영으로 공공성 악화 우려

자. 추진계획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 2026. 9.

○ 민간위탁 공고 : 2026. 10. ~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26. 11.

○ 협약 체결 : 2026. 12. 20. 한

○ 민간위탁 운영 : 2027. 1. ~ 2031. 12.(5년)

3. 참고사항

○ 참고 1 : 소요예산 원가계산서

○ 참고 2 : 관계법령

[참고1]

소요예산 원가계산서

(단위 : 원/년)

비목		산출액	비고
인건비	기본급	75,363,456	관리소장 1명, 매표관리원 3명, 청소업무원 1명
	제수당	10,691,520	
	상여금	10,547,040	
	퇴직급여충당금	7,043,388	
	소계	103,645,404	
지출경비	보험료	9,692,352	
	복리후생비	8,802,000	
	통신비	252,470	
	수도광열비	1,894,437	
	전력비	2,048,268	
	세금과공과	12,000	
	소모품비	1,989,900	
	지급수수료	382,800	
	기타경비	180,900	
	소계	25,255,127	
중계		128,900,531	
일반관리비		7,734,031	
이윤		13,663,456	
지출원가		150,298,018	
운영수입	매표수입	33,116,463	
	수입원가	33,116,463	
관리위탁비		-117,181,554	
부가가치세포함		-128,899,000	천단위 절사

[참고2]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 · 검사 · 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 · 관광 · 체육시설
4. 공원 · 녹지시설
5. 보건 · 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 ·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